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업무협력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대구대학교(이하 “대학”)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 자구노력 연계 추가 지원사업”(이하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시행함에 있어,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협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의 의무와 책임) ①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시행기준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대학이 자체노력을 통해 마련한 장학금은 재단에서 제시한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설립목적 및 미래 인재양성 등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학은 국가장학금 II유형 “자체노력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장학금 II유형 금액에 상응하는 자체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대학은 학생이 적기에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장학전담 인력 확충 및 전산시스템을 설치·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단의 장학금 수요파악 등 각종 자료요청 및 업무처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재단의 역할과 책임) ① 재단은 “대학별 재정배분 과정 및 방식”에 따라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한다.

② 재단은 학생의 가구 소득수준 및 학자금 관련 자료를 파악하여 대학에 제공한다.

③ 재단은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제4조(협약의무 미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① 동 협약상 의무를 대학이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단은 해당 금액 반환 및 다음

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시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대학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는 경우

나. 대학이 “자체노력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대학은 반환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학은 반환결정서 또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 결과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된 금액을 재단에 반환 한다.

제5조(중복지원 방지) 협약당사자는 학자금 재원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장학금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금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강화) 협약당사자는 학생이 장학금 미신청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7조(비밀 유지) 협약당사자는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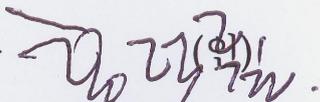
제8조(개인정보 보호) 협약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상의 지위이전 및 변경) 본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협약상의 지위를 이전·양도할 수 없으며,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씩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대구대학교 총장

홍 덕 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이 경 속

(인)

